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재나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자 2021재나23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32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56813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재심원고) 1. B

2. C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8.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32508 판결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5681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청구취지피고(재심원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E, D와 공동하여 405,795,410원 중 200,873,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재심원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E, D와 공동하여 405,795,410원 중 204,92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N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813 사건으로 피고들을 주위적 피고로, (주)E(이하 'E'라고 한다), D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피고들과 (주)F(이하 'F'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와 E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피고들, E, D가 공동하여 가액배상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5. 31. 피고들은 수익자가 아닌 전전득자여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과 F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E,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심 판결).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E, D가 모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2508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제1심 판결 인용 부분과 같이 변경함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E, D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E, D가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26418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19. 7. 12.

상고인인 피고들, E, D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존재

F가 2012. 8. 21. E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것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5억 원을 변제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로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판단하여 F가 E에게 지급한 25억 원이 증여가 아닌 변제라는 점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E 제11기 감사보고서(을 제13호증)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존재

쿠르드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이하 ‘KRG’라 한다)는 2012. 8. 16. F의 I은행 계좌에 미화 21,546,000달러(한화 약 242억 원)를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 위 계좌에서 148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그 수표 중 25억 원이 2012. 8. 12. E에게 송금되었다. 그렇다면, F가 2012. 8. 12. E에게 25억 원을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본 재심대상판결은 KRG가 2012. 8. 16. F의 I은행 계좌에 송금한 미화 21,546,000달러가 F의 돈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미화 21,546,000달러의 대부분은 G와 KRG의 다른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본 앞선 서울고등법원 2016노3974 판결(을 제16호증)과 명확히 배치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심사유를 안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만일 재심원고가 판결송달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9. 3. 25. 및 2019. 3.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2019. 7. 1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21. 11.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 정본의 송달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부분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판결문 제6, 7쪽에서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은 모두 송금일에 해당 금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을 제13호증까지 포함하여 F가 2012. 8. 21. E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이 사건 송금을 변제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이상, 을 제13호증의 증거가치의 평가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와 달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3974 판결은 F 대표이사 G, F(G은 재심대상판결의 피고도 아니다)에 대하여 내려진 형사판결로서 형사피고인인 G, F의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유 무죄의 판단에 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판결의 당사자인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와 피고들에게는 위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권순형, 판사 박형준